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10. 30 선고 2024가단1572 판결 [건물명도]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0.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9.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매월 10일 선불 지급), 임대차기간 2020. 9. 10.부터 2024. 9.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3. 7. 10.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분이 2024. 5.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4. 5. 27. 원고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민정

별지